



#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련법령

## [ 대기배출시설 ]

번호	점검사항 및 주요확인사항	관련법조 (법명 : 대기환경보전법)
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### 인허가 관련

1	<b>대기배출시설 여부 확인</b> • 업종 및 시설 분류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여부 확인 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3] 대기배출시설 분류 참고)	• 법 제2조제11호, 시행규칙 제5조 [별표3]
2	<b>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여부</b> • (대상)특정대기유해물질이 허가대상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(대상시설 관련법조 참고)	• (허가)법 제23조, 시행령 제11조제1항 • (특정대기유해물질)법 제2조제9호, 시행규칙 제4조 [별표2] • (특정대기유해물질 적용기준) 시행규칙 제24조의2 [별표 8의2]
3	<b>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여부</b> • (대상)허가대상 이외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	• (신고)법 제23조, 시행령 제11조제2항
4	<b>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 신고(허가) 여부</b> • (변경전 허가·신고)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증설·교체·폐쇄, 배출시설 용도 추가, 원료·연료 변경, 그 외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 변경 • (변경후 신고)새로운 오염물질 배출, 대표자·사업장명 변경 등	• (변경허가)법 제23조, 시행령 제11조제4항 • (변경신고)법 제23조, 시행규칙 제27조
5	<b>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여부</b> •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·변경을 완료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 후 조업	• 법 제30조, 시행령 제15조

###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관련

6	<b>자가측정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</b> • 자가측정 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-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최초 자가측정 시기는 배출시설 가동일자 기준으로 다음 주기(주, 월, 분기, 반기)부터 적용 -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실시 의무	• (자가측정)법 제39조,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• (배출허용기준)법 제16조, 시행규칙 제15조 [별표8]
7	<b>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</b> • 방지시설 정상운영(여과물교체, 약품투입 등) • (금지행위)공기희석, 공기조절장치 및 가지배관 설치, 시설의 부식·마모·훼손 등 방지,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• 연료 황함유 기준 준수	• (시설운영)법 제31조제1항제1호~5호 • (연료)법 제41조, 시행령 제40조 [별표10의2]
8	<b>측정기기 부착, 운영</b> • 적산전력계,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유무 • 측정기기 정상가동 여부 확인 • (금지행위) 측정기기 조작, 측정결과 누락 및 거짓작성 등	• 법 제32조, 시행령 제17조 [별표2]·[별표3], 시행규칙 제37조 [별표9]
9	<b>운영일지 작성</b> 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매일 기록 및 보존	• 법 제31조제2항, 시행규칙 제36조 [별지 제7호서식]

### 환경기술인

10	<b>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및 자격기준, 준수사항</b> • 환경기술인은 임명 및 사업장에 상근 등의 준수사항 준수 (관련법조 참고)	• 법 제40조, 시행령 제39조 [별표10], 시행규칙 제54조
11	<b>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</b> • 최초교육: 최초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• 보수교육: 최초 교육 후 3년 마다 실시	• 법 제77조제1항, 시행규칙 제125조

**참고** ▶ 최신 법령 조회 방법: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'대기환경보전법' 검색  
※ 최신법령을 조회하여 각 규정의 세부내용 확인 및 이행 필요







#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크리스트

## [ 폐수배출시설 ]

번호	점검사항 및 주요확인사항	관련법조 (법명 : 물환경보전법)
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### 인허가 관련

1	<b>폐수배출시설 여부 확인</b> •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를 1일 최대 0.01m³ 배출하거나 •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1일 최대 0.1m³ 배출하는 시설 등 [시행규칙 별표4 참고]	• (폐수배출시설)법 제2조제10호, 시행규칙 제6조 [별표4] • (특정수질유해물질)법 제2조제8호, 시행규칙 제4조 [별표3]
2	<b>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여부</b> • (대상)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	• (허가)법 제33조 제1항, 시행령 제31조제1항 • (특정수질유해물질 적용기준) 시행규칙 제35조의2 [별표13의2]
3	<b>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여부</b> • (대상)허가대상 이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	• (신고)법 제33조, 시행령 제31조제2항
4	<b>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신고(허가) 여부</b> • (변경전 허가-신고)폐수배출량 증가 또는 감소,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, 폐수처리 방법 및 공정 변경, 시설 일부 폐쇄 • (변경후 신고) 대표자·사업장명·소재지 변경, 폐수 위탁처리 업체 변경, 사업장 전부 폐쇄 등	• (변경허가)법 제33조, 시행령 제31조제3항 • (변경신고)법 제33조, 시행규칙 제38조
5	<b>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 여부</b> •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·변경을 완료한 경우 가동 시작 신고 후 조업	• 법 제37조, 시행령 제34조

###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관련

6	<b>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</b> • 최종방류수 수질상태 확인(별도 수질 분석을 통해 확인) ※ 유기물질 배출허용기준 관리지표 변경(COD→TOC)	• 법 제32조, 시행규칙 제34조 [별표13] ※ 산업·농공단지 는 별도배출허용기준 확인
7	<b>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</b> • 방지시설 정상운영(약품투입, 처리수질확인, 슬러지처리 등) • (금지행위)비밀배출구설치 및 무단방류, 희석행위, 방지 시설 비정상가동 등	• 법 제38조 제1항 제1~4호
8	<b>측정기기 부착, 운영</b> • 적산전력계, 유량계 설치유무 및 정상가동 여부 확인 •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여부 확인 • (금지행위)측정기기 조작, 측정결과 누락 및 거짓작성 등	• 법 제38조의2제1항, 시행령 제35조 [별표7]
9	<b>운영일지 작성</b> 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매일 기록 및 보존	• 법 제38조제3항, 시행규칙 제49조 [별지 제18~20호서식]
10	<b>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·인수시스템 입력</b> • 수탁처리폐수를 처리업체에 위탁 시 전자인계·인수시스템 (올바로스시스템)에 입력	• 법 제66조의2제2항, 시행령 제79조의3, 시행규칙 제92조의2 [별표 21의2]

### 환경기술인

11	<b>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및 자격기준, 준수사항</b> • 환경기술인 임명 및 준수사항 준수(관련법조 참고)	• 법 제47조, 시행령 제59조 [별표17]
12	<b>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</b> • 최초교육 : 최초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• 보수교육 : 최초 교육 후 3년 마다 실시	• 법 제67조제1항, 시행규칙 제93조

**참고** ▶ 최신 법령 조회 방법: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'물환경보전법' 검색  
 ※ 최신법령을 조회하여 각 규정의 세부내용 확인 및 이행 필요



